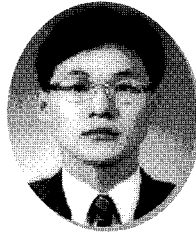


제도개선위원회



오성남
(주)스마트엔지니어링 사장
제도개선위원장
shallpass@paran.com

제도개선위원회는 토질및기초기술사와 관련된 각종 제도 및 법률의 개선을 통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표 1은 우리회와 관련된 기술사제도의 운영체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술사의 육성과 관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괄하고, 기술사 시험은 고용노동부에서, 그리고 활용은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등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기술사법,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이 있습니다.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상기 법령들의 개정 내용, 입법 예고 사항 등을 파악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기관에 의견을 제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상기 법령들과 관련하여 우리 회원들이 숙지해야 할 사항을 표 2부터 표 6까지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중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하위규정과 관련하여 주요 변경 내용은 표 2, 표 3과

같습니다. 변경된 법령에 따라 청기터널 건설공사 시설설계용역(경상북도공고 제2011-480호)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 중 토질·지질, 구조 전문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중인 「국가기술자격법령」 하위규정과 관련하여 주요 변경 내용은 표 5, 표 6과 같습니다. 국토개발 분야에 속해있던 지질및지반기술사가 토목분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중인 「기술사법령」하위규정과 관련하여 주요 변경 내용은 표 8, 표 9, 표 10과 같습니다. CPD 교육과 관련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에서 2년이 지난 자로 교육훈련대상이 변경되었고, 기술사 시험 응시자격은 응시종목과 관련이 있는 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만 학력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0년 1월부터 시행중인 「건설기술관리법령」 하위규정과 관련하여 주요 변경 내용은 표 11, 표 12와 같습니다. 용역규모에 따른 설계용역업자 선정시 PQ 평가후 기술사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표 1. 기술사 제도 운영체계

구분	기술사법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소관 부서	교육과학기술부 과학인재육성과	고용노동부 자격정책과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
	기술사 육성·관리	기술사 검정	기술사 활용	기술사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운영 : 기본계획, 인력수급, 종목조정 등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 총괄 기술사 검정 시행 자격증 교부 및 사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사업법에 따라 기술사 활용 : 산업별 기술용역/감리업 허가 등 자격검정 및 취소 권한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사업법에 따라 기술사 활용 : 산업별 기술용역/감리업 허가 등 자격검정 및 취소 권한 보유

표 2.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기준 변경 내용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전문분야	93개 전문분야	48개 전문분야	42개 통폐합, 6개 신설
신고인력	동일 기술부문 전문분야 추가시 5인 (특급인 포함)	동일 기술부문 전문분야 추가시 3인 (고급인 포함)	※기술사는 특급 1인과 초급 1인으로 2인 인정 ※최초 신고시 전문분야별 5인

표 3. 엔지니어링 기술 분류(시행령 별표1 중 건설부문)

기술부문	전문분야
건설부문	1) 도로·공항 2) 항만·해안 3) 철도 4) 교통 5) 농어업토목 6) 도시계획 7) 조경 8) 구조 9) 수자원개발 10) 상하수도 11) 토질·지질 12) 측량·지적 13) 품질시험

표 4. 엔지니어링 기술 전문분야 통폐합 비교(시행령 별표2 중 건설부문)

5월1일 이전 전문분야	5월1일 이후전문분야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탐사	토질·지질
토목구조, 건축구조	구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지적
토목품질시험, 건축품질시험	품질시험

표 5. 국가기술자격 종목정비 및 분류체계 개선, 응시자격 변경 내용(기술사)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분류	22개 직무분야, 89개 자격종목	12개 직무분야, 84개 자격종목	기존 직무분야를 중직무분야로 변경하고, 직무분야를 새로이 개편
응시자격	응시종목과 관련없는 학과를 졸업해도 학력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응시종목과 관련있는 학과를 졸업하는 경우에만 인정	※지나친 학력우대 조항 개정 ※경력을 우대하기 위해 실무 증서기간은 종전보다 1~2년 줄임 (기사자격 소지자는 동일)

표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 기술사 자격 분류

직무분야 (신설)	중직무분야 (신설)	자격종목
건설	토목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항만및해안, 철도, 교통, 농어업토목,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지질및지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토목품질시험, 토목시공, 해양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품질시험, 건축시공
	조경	조경
	도시·교통	도시계획, 교통

표 7. 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 기술사 자격 분류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자격종목
토목	(분류없음)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항만및해안, 철도, 교통, 농어업토목,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토목품질시험, 토목시공, 해양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품질시험, 건축시공
국토개발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교통		교통

표 8. 기술사 교육 훈련 대상 등

구분	당초	변경
건축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자로서 3년마다 90학점 교육이수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자로서 3년마다 90학점 교육이수
자격취득일에 따른 이수기간	06년 7월27일 이전 취득자 : 07년 7월27일~10년 7월26일 이내 06년 7월27일 이후 취득자 : 취득일 1년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	06년 7월27일 이전 취득자 : 08년 7월27일~11년 7월26일 이내 06년 7월27일 이후 취득자 : 취득일 2년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

표 9. 「기술사법령」 하위규정에 따른 건설분야 기술사 자격 분류

종류	기술범위
건설분야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항만및해안, 철도, 교통, 농어업토목,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지질및지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토목품질시험, 토목시공, 건설안전, 화약류관리, 조경, 도시계획,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건축품질시험, 건축시공

참고) 2009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 기술사 자격 종목정비 추진 계획(안)

1단계(단기적 방안) : 22개 기술분야로 분류하고 세부 종목명(89개) 병기 예) 토목공학기술사(토질 및 기초), 국토개발기술사(지질 및 기반) 등
2단계(중·장기적 방안) : 기술분야를 종목으로 바꾸는 종목간 통합 추진(15~20개) 예) 지반공학기술사, 구조공학기술사, 건설공학기술사

표 10. 제2차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11~'13) 요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분류	22개 직무분야, 89개 자격종목	12개 직무분야, 84개 자격종목	기존 직무분야를 중직무분야로 변경하고, 직무분야를 새로이 개편
응시자격	응시종목과 관련없는 학과를 졸업해도 학력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응시종목과 관련있는 학과를 졸업하는 경우에만 인정	※ 지나친 학력우대 조항 개정 ※ 경력을 우대하기 위해 실무 종사기간은 종전보다 1~2년 줄임 (기사자격 소지자는 동일)

표 11. 용역규모에 따른 설계용역업자 선정방법

구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PQ 평가후 기술자 평가	PQ 평가후 기술제안서 평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건축설계	2~5억	5~10억	10억이상
실시설계	2~10억	10~20억	20억이상

※ 기술자 평가·기술제안서 평가는 특수공정 포함 또는 발주청 필요시 실시

표 12. 기술자 평가·기술제안서 평가방법 개선내용

구분	당초	변경
대상선정기준	발주청 필요에 따라 대상사업선정	전문분야별·시설물별·사업특성별로 대상사업선정
평가위원회구성	발주청 소속직원과 외부인원으로 구성	발주청 소속직원 위주로 구성
평가위원공개	사전 미공개	사전 공개
평가기준	PQ점수를 제안서 평가에 반영	PQ점수를 배제하고 설계팀의 능력평가로 대체

※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참여기술자의 전문분야별 가중치는 해당 용역의 특성에 따라 설정하는데 도로 및 항만공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분야는 40%를 적용하고, 구조분야와 토질분야는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있음.